

대전광역시 공무원능력발전지역협의회 조례안

의안 번호	239
----------	-----

제출연월일 : 2007. 10. 29.

제 출 자 : 대전광역시장

1. 제안이유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대전광역시 공무원능력발전지역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

2. 주요내용

가. 대전광역시 공무원능력발전지역협의회의 기능 및 구성에 대하여 정함(안 제2조 및 제3조).

나. 대전광역시 공무원능력발전지역협의회의 회의 및 간사에 대하여 정함(안 제6조 및 제7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다. 합 의 : 해당없음

라. 기 타

(1) 규제심사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2) 입법예고 : 2007년 8. 10 ~ 8. 30까지

대전광역시 공무원능력발전지역협의회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대전광역시 공무원능력발전지역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대전광역시 공무원능력발전지역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공무원 교육훈련정책의 수립 및 개선방향
2. 대전광역시와 자치구 상호간 교육훈련에 관한 조정·협조사항
3. 국가의 정책 추진상 공무원 교육훈련에 반영하여야 할 사항
4. 그 밖에 공무원교육과 관련하여 협의회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3조(구성) ①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협의회는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인력개발과장이 된다.

③당연직위원은 자치구의 공무원 교육훈련업무 담당국장, 대전광역시공무원교육원 교학과장이 되고, 위촉위원은 공무원 교육훈련에 관한 학식과 경험을 갖춘 자 중에서 대전광역시장의 위촉하는 자가 된다.

제4조(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는 직무를 총괄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①위원장은 협의회는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협의회는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간사) 협의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공무원교육훈련업무 담당사무관이 된다.

제8조(의견의 청취) 협의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공무원이나 관계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9조(수당 등) 회의에 참석한 위촉위원 및 관계전문가에 대하여 「대전광역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한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운영규정)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제19조 (공무원능력발전협의회의 설치) ①교육인적자원부장관 및 행정자치부장관은 지방공무원의 능력발전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교육인적자원부 및 행정자치부에 관계 공무원(지방공무원을 포함한다)과 교육훈련에 관한 전문가로 구성되는 지방공무원능력발전협의회를 각각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시·도지사는 소속 지방공무원 및 당해 시·도 관할 구역 안의 시·군 및 자치구의 시장·군수 및 구청장 소속 지방공무원의 능력발전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당해 시·도에 관계 지방공무원과 교육훈련에 관한 전문가로 구성되는 지방공무원능력발전지역협의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당해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본조신설 2007.1.3]

□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 시·도 협의회 설치의 근거조항 ×

제35조 (지방공무원능력발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 ①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교육인적자원부 및 행정자치부에 설치하는 지방공무원능력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교육인적자원부에 설치하는 협의회의 위원장은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지방공무원 능력발전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이 되고, 행정자치부에 설치하는 협의회의 위원장은 행정자치부에서 지방공무원 능력발전 업무를 담당하는 본부장이 된다.

③협의회의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고, 당연직 위원은 교육인적자원부 또는 행정자치부 및 시·도(시·도 교육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교육훈련 업무를 총괄하는 실·국장급 공무원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교육훈련에 관한 학식과 경험을 갖춘 자 중에서 교육인적자원부장관 또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위촉한 자가 된다.

④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협의회는 지방공무원 능력발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지방공무원 교육훈련정책의 수립 및 개선방향
2. 지방자치단체 상호간 교육훈련에 관한 조정·협조 사항
3. 국가의 정책추진상 지방공무원의 교육훈련에 반영하여야 할 사항
4. 교육인적자원부장관 또는 행정자치부장관이 협의회에 부의하는 사항

⑤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본조신설 2007.4.12]

대전광역시 공무원능력발전지역협의회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07년 11월 26일
행정자치위원회

I.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7년 10월 29일 대전광역시장
2. 회 부 일 자 : 2007년 10월 30일
3. 상 정 일 자 : 제170회 대전광역시의회(정례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2007. 11. 26)
상정, 심사, 수정가결

II. 제안설명요지(제안설명자 : 자치행정국장 조찬호)

1. 제안이유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대전광역시 공무원능력발전지역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

2. 주요내용

- 가. 대전광역시 공무원능력발전지역협의회의 기능 및 구성에 대하여 정함(안 제2조 및 제3조).
- 나. 대전광역시 공무원능력발전지역협의회의 회의 및 간사에 대하여 정함(안 제6조 및 제7조).

III. 전문위원 검토요지(전문위원 이희배)

○ 본 제정 조례 안은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개정에 따라 지방공무원의 능력발전을 위한 협의를 위하여 대전광역시 공무원능력발전지역협의회를 구성·운영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문 제10조와 부칙으로 축조되어 있는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조례 안 제1조에서 제정 목적을, 조례 안 제2조에서는 협의회의 기능을, 제3조 내지 제4조에서는 협의회의 구성과 회의에 관한 사항을, 제7조 내지 제10조에서는 간사 및 수당 등 기타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본 조례 안 검토결과

관계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공무원의 교육훈련정책 수립 및 개선 등 능력발전에 관한 제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한 공무원능력발전지역협의회를 구성하려는 것으로써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다만, 조례안 제3조제2항에서 “협의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 하고, 부위원장은 인력개발과장이 된다.” 라고 규정하여 부위원장을 당연직으로 정한 사항에 대하여는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사료됨.

IV. 토 론 요 지 : 생 략

V. 질의답변요지 : 생 략

VI. 심 사 결 과 : 수정가결

VII.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대전광역시 공무원능력발전지역협의회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239
----------	-----

제안연월일 : 2007. 12.

제 안 자 : 행정자치위원장

1. 수정이유

협의회의 자율성을 제고하고자 부위원장을 호선하도록 수정함.

2. 주요내용

1. 협의회의 부위원장을 당연직으로 지정한 것을 위원 중에서 호선 하도록 함(안 제3조제2항).
2. 당연직 위원으로 인력개발과장을 추가함(안 제3조제3항).

대전광역시 공무원능력발전지역협의회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대전광역시 공무원능력발전지역협의회 조례안중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3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협의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안 제3조제3항중 “당연직위원은” 다음 “인력개발과장,” 을 삽입한다.

수정안 조문 대비표

제 정 안	수 정 안
<p>제3조(구성) ① (생략)</p> <p>②협의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인력개발과장이 된다.</p> <p>③당연직위원은 자치구의 공무원 교육훈련업무 담당국장, 대전광역시공무원교육원 교학과장이 되고, 위촉위원은 공무원 교육훈련에 관한 학식과 경험을 갖춘 자 중에서 대전광역시장 이 위촉하는 자가 된다.</p>	<p>제3조(구성) ① (개정안과 같음)</p> <p>② 협의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p> <p>③당연직위원은 인력개발과장, 자치구의 공무원 교육훈련업무 담당국장, 대전광역시공무원교육원 교학과장이 되고, 위촉위원은 공무원 교육훈련에 관한 학식과 경험을 갖춘 자 중에서 대전광역시장이 위촉하는 자가 된다.</p>